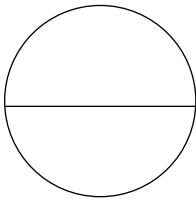


고양시 덕양구청장 (세무1과)
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 104번길 13
주택재산팀
10497

문의처
고양시 민원콜센터 031) 909-9000

미래를 바꾸는 힘! 고양



재산세 과세대상 변동신고서

구 분	성 명	생년월일	주 소	휴대 전화번호
납세의무자 (소유자)				
과세물건 현황	물건소재지(오피스텔 주소)			변동신고내용
	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(건물명:	동) 동	번지 호	일반업무시설 → 주거용오피스텔

【신청 전 안내사항】

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변경 신청할 경우

- ▶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소유한 기존 주택이 재산세 1세대 1주택 세율특례가 적용된 경우, 변동 신고로 인해 **재산세 1세대 1주택 세율특례 혜택을 받을 수 없고, 향후 주택 취득 시 취득세, 양도소득세, 종합부동산세 등 과세부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 [국세문의 ☎126]**
- ▶ 위와 같이 신고한 내용의 과세적용은 신청일 이후부터 재산세에 한하여 적용됩니다.

지방세법 제120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산세 과세대상 변동사항을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

서명 또는 인

덕양구청장 귀하

※ 재산세 과세기준일 (2026. 6. 1.) 현재 세대보유 주택 (신고물건제외)
총 호를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. 신고인 : (서명)